

알기쉬운 特許制度와 節次

<特許廳 指導課>

— 承 前 —

5. 拒絶査定

拒絶理由의 通知가 있는 後 그 理由를 顛覆시킬 수 있는 事由를 發見할 수 없을 때에는 審査官은 拒絶査定을 하게 된다. 그런데 拒絶理由通知가 2回 以上 發하여 지는 경우로서 더 以上 拒絶理由의 通知가 必要치 않을 것으로 審査官이 決定한 경우에는 最終拒絶査定通知를 하게 된다.

特許, 實用新案登錄 및 意匠登錄의 出願에 있어서 그것이 拒絶査定되어도 先出願權은 認定되므로 同一內容 또는 類似內容의 後出願은 原則적으로 特許 또는 登錄이 許與되지 않지만 商標登錄出願은 그것이 拒絶査定이 確定되면 처음부터 그 出願이 없었던 것으로 看做되므로 同一 또는 類似商標가 後出願되어 登錄이 許與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出願人은 拒絶査定을 받으면 그에 對한 不服抗告審判을 請求할 것인지를 決定함에 있어서 慎重을 期하여야 할 것이다.

拒絶査定된 出願은 그 査定의 送達을 받은 날로부터 30日內에 不服抗告審判을 請求하지 않으면 拒絶査定이 確定되며 또한 不服抗告審判에 있어서도 그에 關한 審決의 送達을 받은 날로부터 30日 以內에 大法院에 上告하지 않으면 역시 拒絶査定이 確定된다.

6. 出願公告

特許出願이나 實用新案登錄出願 또는 商登標

錄出願의 경우에는 拒絶할 理由를 發見할 수 없을 때에는 出願公告決定을 하게 된다. 그러나 意匠登錄出願의 경우에는 拒絶할 理由가 發見되지 않으면 審査官은 바로 登錄査定하게 되어 있다.

出願公告가 決定된 出願의 明細書나 圖面 또는 商標出願 內容은 特許公報·實用新案公報 또는 商標公報에 各各 掲載 公告된다.

이와 같은 出願公告는 技術의 事前公開과 公衆審査 卽 利害關係人은 勿論 一般人에게까지도 널리 異議申請을 할 수 있는 機會를 주려는데 그 目的이 있다.

特許와 實用新案出願의 公告期間은 公告日의 翌日부터 起算하여 2個月이며 商標出願公告는 30日間인데 이 公告期間中에는 누구든지 異議申請을 提出할 수가 있다.

特許 및 實用新案의 出願公告가 있을 때에는 그 出願은 公告가 있는날로부터 權利가 遡及하여 發生한 것으로 본다.

7. 異議申請

出願公告期間中에는 누구든지 異議申請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審査官의 資料만으로서 發見할 수 없는 拒絶理由를 公衆審査의 協調를 얻어 發見하고자 하는 制度이다.

異議申請을 하려면 그 理由와 必要한 證據方法을 提出하여야 하며, 만일 異議申請의 理由를 訂正하거나 證據의 追加提出을 하고자 할 때에는 異議申請期間 經過後 30日 以內에 하여야 한다.

(4) 特許制度와 節次품이

異議申請의 結果 明細書나 圖面을 訂正할 必要가 있다고 認定되는 경우에는 審査官은 出願人에 對하여 補正을 命할 수가 있으나 그 補正은 特許請求範圍의 減縮, 誤記의 訂正 또는 不明瞭한 記載의 釋明에 限한다.

異議申請書의 副本은 出願人에게 送付하고 指定期間內에 答辨書提出의 機會를 주며, 必要에 따라서는 그 答辨書를 異議申請人에게 보내어 이에 對한 辯駁書를 提出하게 할 수도 있다.

特許와 實用新案의 경우 審査官은 出願公告後 2個月이 經過하고 또 理由의 訂正이나 證據追加를 할 수 있는 30日의 期間이 經過하면 異議申請에 對한 決定을 하는데, 그 決定에 따라 特許査定(登錄査定) 또는 拒絶査定을 하게 된다. 그런데 그 理由 및 證據를 提出하지 아니한 異議申請書는 決定으로 却下할 수가 있다.

出願公告後에 審査官이 職權으로 發見한 拒絶理由로 拒絶査定을 하는 경우에는 異議決定을 하지 아니하고 異議申請人에게 그 拒絶査定謄本만을 送達하게 된다.

拒絶査定에 對하여 出願人은 不服抗告審判請求를 할 수 있으나 異議申請이 理由없다는 決定의 通知를 받은 異議申請人은 그 異議決定에 對하여서는 不服을 提起할 수가 없으며, 다만 그 出願이 特許되거나 登錄된 後에 利害關係가 成立되는 경우에 限하여 無效審判이나 權利範圍 確認審判을 請求할 수가 있다.

그런데, 2 이상의 異議申請이 있는 경우에는 그 審査와 決定을 分離하여 行할 수도 있고 併合하여 行할 수도 있으며, 그중 하나에 對하여 異議가 成立할 때에는 그에 對해서만 異議決定을 하고 다른 異議申請人에게는 拒絶査定謄本만을 送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異議申請된 理由와 證據는 그것이 異議決定에는 採擇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出願의 拒絶査定 不服抗告 審判請求의 審理에서는 職權調査의 對象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異議申請은 同業者間의 過當競爭意識에 依하여 故意的으로 提出하여서도 안되겠지만, 反面消極的, 近視眼的인 姿勢로 悚忽하게 看過해 버려서도 안 될 것이다.

權利가 設定된 후 뒤늦게 無效審判이나 權利

範圍確認審判을 請求하려면 이에 所要되는 費用과 時間과 努力은 異議申請에 所要되는 것에 비하여 매우 큰 것이므로 權利가 設定되기 前에 異議申請을 하여야 하겠고 이와같은 異議申請의 活用을 爲한 協調를 널리 勸獎하는 뜻에서 그 手數料(印紙代)는 他手數料에 비하여 매우 少額인 500원으로 하고 있다.

8. 特許(登錄)査定

拒絶할 理由가 發見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異議申請이 成立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審査官은 特許(登錄)査定을 하게 된다.

特許(登錄)査定된 後에도 特許(登錄)權 設定의 登錄을 하기 前까지는 審査官은 새로운 拒絶理由가 發見되었을 때에는 拒絶査定을 할 수가 있다.

10 登錄節次

1. 節 次

登錄査定을 받고 指定을 받고 指定期間內에 所定の 登錄料를 納付하면 登錄原簿에 登錄이 되고 登錄證을 交付받게 된다.

特許料, 實用新案登錄料 및 意匠登錄料는 査定通知日로부터 6個月 以內에 最初 3年分을 一時에 納付해야 하며, 이 期間이 經過되면 特許料 및 實用新案登錄料는 6個月 以內에 그리고 意匠登錄料는 3個月 以內에, 最初 3年分에 該當하는 金額의 2倍를 追納하게 되며, 만일 追納期間이 經過하여도 登錄料를 納付하지 않을 때에는 遡及하여 그 權利가 消滅된다. 그리고, 第4次年度分 부터는 每 1年分을 그 前年度에 納付하여야 하는 것이다.

商標登錄料는 登錄査定 또는 審決에 依한 登錄査定謄本을 送達받은 날로부터 30日 以內에 存續期間인 10年分을 一時拂로 納付하여야 하며 30日에 限해 請求에 依해 登錄料納付期間을 延長받을 수 있다.

그런데, 商標登錄料納付에 있어 同時에 納付해야 하는 登錄稅와 防衛稅는 반드시 그 出願人

特許制度和 節次풀이(4)

의 居住地의 市郡에 納付하여야 하나, 서울과 같이 特許廳 所在地에서 納付할 수 있도록 委任된 경우는 例外이다.

2. 登錄料

特許料는 처음 登錄할 때 最初 3年分 9,000원을 一時拂하여야 하고 4年째부터는 每年 納付해야 하는데, 4年부터 6年까지는 每年 4,000원씩, 7年부터 9年까지는 每年 9,000원씩, 10年부터 12年까지는 每年 18,000원씩 納付하여야 한다.

實用新案登錄料는 最初 3年分이 6,000원이고 4年부터 6年까지는 每年 4,000원씩, 7年부터 9年까지는 每年 8,000원씩, 마지막 10年째는 16,000원이다.

意匠登錄料는 最初 3年分이 6,000원이며 4年부터 6年까지는 每年 4,000원씩이고, 마지막

등 록 료

년차별 권리별	최초 등록료 (1~3 년분)	추 납 요 금		
		4~9년	7~9년	10~12년
특 허	9,000원	매년 4,000원	매년 9,000원	매년 18,000원
실용신안	6,000	4,000	8,000	16,000
의 장 (유의사항)	6,000	4,000	8,000	
상 표	10년분 (일시불) 30,000	지정상품, 지정영업, 지정업무가 각각 5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상품(영업, 업무)당 1,000원씩 부가료를 가산함.		
1. 신규 및 지정 상품 추가 (영업료, 업무 부포장 포함) 2. 존속기간 갱신 (")	40,000	부가료 없음		

2年은 每年 8,000원씩이다,

商標登錄料는 30,000원이며, 指定商品追加(營業標, 業務標章 包含) 登錄때에도 같은데 다만 指定商品, 指定營業, 指定業務가 各各 5個를 超過하는 경우에는 그 超過하는 每商品(營業, 業務)當 1,000원씩 附加料가 加算된다. 그리고 存續期間更新 登錄料는 40,000원이고 附加料는 없다.

기타 등록료

가, 상속에 의한 이전등록 매건 1,500원

나, 상속 이외의 이전

특 허 권	실용신안권	의 장 권	상 표 권
매건 7,500	4,500	4,500	15,000

다, 실시권 및 통상사용권 설정 또는 그 보존 등록

특 허 권	실용신안권	의 장 권	상 표 권
매건 4,000	4,000	4,000	4,000

라, 질권설정등록

채권금액의 1,000분의 5

마, 실시권, 통상사용권 및 질권의 이전등록

○ 상속에 의한 경우 : 매건 600원

○ 상속이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 : 매건 1,000원

바, 정정, 변경, 취소, 말소 또는 회복 등록
매건 600원

사, 가등록 매건 1,000원

아, 재외자의 특허관리인 선임 또는 변경등록
매건 1,000원

<계 속>

特許技術開發하여 産業發展 이룩하자!